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32

발의연월일: 2024. 12. 5.

발 의 자:정희용·김성원·윤영석

서천호 · 신성범 · 이인선

박충권 • 박정하 • 정동만

박성민 · 김예지 · 김태호

최은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으로 하여 금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고용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고 있음.

그런데 적지 않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부담금 납부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자체평가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실적이 반영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고용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2항 및 제33조제11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실적을 다음 각 호 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 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 주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제32조의2제2항 전단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 제33조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이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고용 실적의 자체평가 등에의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28
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체평가 등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3 .3	2 2 2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의 특례) (생 략)	고용률의 특례)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실적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
	<u>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u>
	<u>할 수 있다.</u>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
	<u>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u>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
	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평가 평가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
부 등) ① (생 략)	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부담금 납부에 관하여는 제	②

33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제3 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 41조(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 42조(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 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 주"는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으로, "의무고 용률"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로, "근로자"는 "공 무원"으로 본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저 ① ~ ⑩ (생 략) <u><신 설></u>

⑪ (생 략)

<u>제12항까지</u>
,
네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의
2제1항에 따른 기관이 의무고
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
용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하여야 한다.
⑫ (현행 제11항과 같음)